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458 발의연월일: 2025. 5. 9.

발 의 자: 민형배・이개호・김현정

김문수 · 김동아 · 박지원

문정복 · 소병훈 · 정동영

김성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용자 친화적인 디지털 콘텐츠 시장 조성을 위해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제화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28일 유명 웹툰 플랫폼인 '피너툰'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그동안 소장용 콘텐츠를 구매한 이용자는 더 이상 콘텐츠를 열람할 수 없게 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022년 콘텐츠 이용피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콘텐츠 및 서비스하자, 제공중단에 의한 피해'가 전체 24.4%를 차지해 피해 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함께 잇따른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입법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은 실효성과 법적 구속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디지털 콘텐츠 이용계약과 사업자의 의무 등을 규율하는 디지

털 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계약 당사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디지털 제품 제공·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733조의2 신 설 등). 법률 제 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편제2장에 제16절(제733조의2부터 제733조의6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절 디지털제품 제공계약

제733조의2(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의 의의)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은 당사 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디지털 형태로 제작·공급되는 콘텐츠 또는 그 콘텐츠의 제작·처리·저장·접근·유통에 관한 서비스(이하 "디지털제품"이라 한다)를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733조의3(제공자의 의무) ①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따라 디지털제품을 제공하는 계약 당사자(이하 "제공자"라 한다)는 계약에 다른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 갖춘 디지털제품을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따라 디지털제품을 이용하는 계약 당사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디지

털제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 1. 제733조의2에 따른 콘텐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 가. 콘텐츠에 접근하거나 이를 내려받도록 하는 방법
 - 나. 콘텐츠의 저장매체를 인도하는 방법
- 2. 제733조의2에 따른 서비스: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이를 이용하도 록 하는 방법
- ③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계약에서 정하였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디지털제품의 계속적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공기간
- 2. 디지털제품의 일회적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디지털제품의 성질과 용도 등을 고려한 상당한 기간
- ④ 제공자는 디지털제품 제공 계약 시 해당 디지털제품의 구체적인 내용(서비스 이용권의 범위 및 기간을 포함한다)을 고지하여야 한 다.
- 제733조의4(제공자의 담보책임) ① 디지털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제공자에게 하자의 시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시정에 과도한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른 하자의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그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제공자에게 대금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하자가 중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금의 감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1. 디지털제품의 계속적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공기간이 종 료한 때
- 2. 디지털제품의 일회적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디지털제품이 제공된 때. 다만, 제733조의3제3항에 따른 보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디지털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무의 존속기간이 종료한 때로 한다.
- ④ 제3항은 이 절 외의 계약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733조의5(디지털제품의 변경) ① 제공자는 디지털제품의 계속적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디지털제품을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다.
 - 1. 제공자가 계약 체결 당시에 디지털제품을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유보(留保)하였을 것
 - 2. 디지털제품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 달성이 곤란해지거 나 당사자 한쪽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등 디지털제품을 변 경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것
 - 3.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디지털제품을 변경하여

제공하는 취지와 내용을 통지하였을 것

-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디지털제품의 변경으로 인하여 디지털제품의 이용에 관한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733조의6(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① 이용자는 계약 종료 이후에 디지털제품을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 ② 이용자가 디지털제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한 콘텐츠가 있는 경우 제공자는 계약 종료 이후에 그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공자가 계약 종료 이후 그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에 이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 2. 제공자 또는 제3자가 그 콘텐츠의 이용에 정당한 이익을 갖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의 효력·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편제2 장제16절(제733조의2부터 제733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신 설></u> <u><신 설></u> | 제16절 디지털제품 제공계약 제733조의2(디지털제품 제공계약 의 의의) 디지털제품 제공계약 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디지털 형태로 제작·공급되는 콘텐츠 또는 그 콘텐츠의 제작 |
| | ·처리·저장·접근·유통에 관한 서비스(이하 "디지털제품" 이라 한다)를 제공하기로 약정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를 지급 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
| <신 설> | 생긴다. 제733조의3(제공자의 의무) ①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따라 디지털제품을 제공하는 계약 당사자(이하 "제공자"라 한다)는 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 갖춘디지털제품을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따라 디지털제품을 이용하는 계약 당사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제공하여야 |

한다.

- ②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디지털제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733조의2에 따른 콘텐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방법
 - 가. 콘텐츠에 접근하거나 이
 를 내려받도록 하는 방법
 나. 콘텐츠의 저장매체를 인
 도하는 방법
- 2. 제733조의2에 따른 서비스:서비스에 접속하거나 이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
- ③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기간 동안 계약에서 정하였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적 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보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디지털제품의 계속적 제공을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공기간
- 2. 디지털제품의 일회적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디지털

 제품의 성질과 용도 등을 고

<신 설>

려한 상당한 기간

- ④ 제공자는 디지털제품 제공 계약 시 해당 디지털제품의 구 체적인 내용(서비스 이용권의 범위 및 기간을 포함한다)을 고지하여야 한다.
- 제733조의4(제공자의 담보책임)
 ① 디지털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제공자에게 하자의 시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시정에 과도한 비용이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른 하자의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그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없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제공자에게 대금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수 있다. 다만, 하자가 중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금의 감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

 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때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

야 한다.

 1. 디지털제품의 계속적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공기

 간이 종료한 때

2. 디지털제품의 일회적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디지털 제품이 제공된 때. 다만, 제73 3조의3제3항에 따른 보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디지털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무의 존속기간이 종료한 때로 한다.

④ 제3항은 이 절 외의 계약에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733조의5(디지털제품의 변경)
① 제공자는 디지털제품의 계속적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디지털제품을 변경하여 제공할수 있다.
1. 제공자가 계약 체결 당시에 디지털제품을 변경하여 제공할수 있다는 점을 유보(留保)하였을 것
2. 디지털제품을 변경하지 아니

<u><신</u>설>

<신 설>

하면 계약의 목적 달성이 곤 란해지거나 당사자 한쪽의 이 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등 디지털제품을 변경하는 데 합 리적인 이유가 있을 것

3.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디지털제품을 변 경하여 제공하는 취지와 내용 을 통지하였을 것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디지털제품의 변경으로 인하여 디지털제품의 이용에 관한 이 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상당 한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33조의6(계약 종료에 따른 법 률관계) ① 이용자는 계약 종 료 이후에 디지털제품을 이용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② 이용자가 디지털제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한 콘텐츠가 있는 경우 제공자는 계약 종료 이후에 그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공자가 계약 종료 이후 그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에 이용

 자가 동의하는 경우
- 2. 제공자 또는 제3자가 그 콘텐츠의 이용에 정당한 이익을갖는 경우